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나.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지원 금지 내용을 본칙에 규정(자치법규 정비대상)

2. 주요내용

- 가. 이중지원 금지 단서 신설(안 제5조)
- 나. 재향군인회 추진사업 및 행사내용 구체화(안 제6조)
- 다. 부칙 제2조 삭제(이중지원 금지 적용)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15. 7. 7. ~ '15. 7. 27)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
2.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전적지 순례
3. 타지역 재향군인회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4. 재향군인회 운영 사무실 개선 지원 사업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계획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따라 조례개정
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해당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50		
정책명	임실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최낙현	전화번호 063-640-202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지원 금지 단서 신설(안 제5조) ○ 재향군인회 추진사업 및 행사내용 구체화(안 제6조) ○ 부칙 제2조 삭제(이중지원 금지 적용)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8월 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주민복지과장 귀하</p>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